간 큰 가족

□ 상속

I. 상속의 의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권리 ·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Ⅱ. 상속권의 의의

상속권의 의의에 관하여, ① 상속권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상속권과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 상속개시 후 확정적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법적 지위를 상속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Ⅲ. 상속의 개시

1. 상속개시의 시기

(1)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상속이 개시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자격이나 상속능력, 상속분산정, 유류분산정 등을 한다.

(2) 구체적 사례

- ① 사망: 사망신고시가 아닌 실제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실종선고 :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③ 부재선고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재선고의 심판확정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인정사망: 인정사망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효과는 없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재가 됨으로써 등록부기재의 추정력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반증이 없는 한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 ⑤ 동시사망의 추정 : 동시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시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습상속은 인정한다(대판 2001. 3. 9, 99다13157).

2. 상속개시장소

피상속인의 주소가 상속개시장소이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거소가 상속개시장소가 된다.

3. 상속비용

- (1)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상속비용은 상속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상속채무에 준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지출하는 것이다.
-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대판 2003. 11. 14, 2003다30968). 여기에는 재산관리비용, 장례비용, 상속세 등이 포함된다.

Ⅳ.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 다.

□ 상속인

I. 상속인과 상속능력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민법은 상속인으로 혈족과 배우자의 두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상속은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상속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상속을 받을 수 있으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할당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Ⅱ. 상속순위

-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목차

- □ 상속
- □ 상속인
- □ 상속의 효과
- □ 유언
- □ 유류분 제도

NOTE

- 2.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에 제시된 ①·②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Ⅲ.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 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 2. 민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 (1)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 (2)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 (3)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의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한다.
- 3. 대습상속권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하거나 승계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인정하는 대습자 고유의 권리이다.

Ⅳ. 상속결격

1. 상속결격의 의의

상속인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선고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제도이다.

- 2. 상속결격의 사유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의 효과

I.일반적 효력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게 될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의 전체이다.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Ⅱ. 공동상속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일단 공동으로 승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 · 분량적인 일부로서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배당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2. 법정상속분

-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단,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처와 부를 불문하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에 의하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때에는 마찬가지로 5할을 가산한다.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 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4. 기여분

- (1)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2)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 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3)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5. 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Ⅳ.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의 분할의 의의

상속인이 다수로 존재하여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을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공유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불과 하다. 그리하여 상속인들이 공동상속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구체적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것을 상속분할재산이라 한다.

2. 분할의 요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로 5년 이내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분할의 효과

-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 (2)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분할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진다.
- (3)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V. 상속의 숭인과 포기

1. 의의

민법은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당연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승인 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승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뉜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이다.

2. 단순승인

- (1)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뿐 아니라 채무 등도 무조건 · 무제한적으로 전면승계 하는 것이다.
- (2) 다음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②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속포기

- (1)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가 상속포기이다.
-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 한다.
- (3)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 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4)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VI. 재산분리제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 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Ⅷ.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와 상속인수색 등의 절차를 거친다.

□ 유언

I.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발전해 온 것이며,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 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법적 성질

- 1. 유언은 하나의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법률행위이다. 유언은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2. 유언은 요식행위이며,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 3.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한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행위이므로 유언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4.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이다.
- 5.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Ⅲ.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본인에게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

더 알아보기

□ 상속자에 대한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상속인 외에 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사망자 외에 심신 상실자, 실종자 포함)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조회, 확 인하기 위하여 상속인 등이 각 종 구비 서류를 지참, 모든 금 융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 접 조회 신청하는데 따른 시간 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 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 등에 대하여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OTE



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또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에서 설명한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유류분

I.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한 다. 이러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Ⅱ.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추상적·기본적 지위를 의미한다.

2. 유류분권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가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3. 유류분권리자

- (1)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선(先)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後)순위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도 유류분권을 가진다.

- 4.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5. 유류분의 산정
- (1) 유류분 기초산정재산 :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채무
- (2) 유류분액 : 유류분 기초산정재산 × 유류분의 비율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의
-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에서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뺀 금액이다.
- 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유류분의 보전)
- (1) 반환청구의 당사자
- ① 청구권자 : 유류분권리자와 그 승계인
- ② 상대방 :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 및 그 상속 인이며, 그 자들로부터 양수한 자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된다.
- (2) 행사방법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반환의 범위는 유 류분액에서 상속의 이익을 공제한 금액이다.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3) 반환순서

유증에 대해 먼저 반환청구를 하여야 증여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수개의 유증 또는 증여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②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 계산하기	
예시	계산 전 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 7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의 아내와 두 딸 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주 장한다면 유류분의 액수는 다음과 같 다.	년 세년의 가득 본의도, 대무기되 시 년의 법정 상속분 비율은 1.5:1이므로, 아내와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3.5:1/3.5:1/3.5이다. 처 : 7억(전 재산) × 1.5/3.5(법정 상속 분) × 1/2(유류분) = 1억 5천만 원 딸 1,2 : 7억 × 1/3.5 × 1/2 = 1억 원

NOTE

□ 선의(善意)와 악의(惡意)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을 의미하며, 악의(惡意)는 어 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 한다. 민법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하 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다.